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엄셋별 의원 발의]

의안번호	2448
------	------

발의일자 : 2023. 11. 15.

발 의 자 : 엄셋별 의원

찬 성 자 : 이인식, 고성미의원

1. 제안이유

우리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 균형과 질적 향상의 실현을 돕고 저출생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며 우리 구의 모든 출생 가정에 출생축하금을 지원하여 출생 장려 분위기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나. 출산을 출생으로 변경(안 제1조부터 제9조).
- 다. 출생축하금을 첫째아, 둘째아까지 확대(안 제6조).
- 라. 출생·양육 지원 자문 위원회(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나. 예산조치: 필요시 조치

다. 합의기관: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현행 조례 : 별도 첨부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도 첨부

3) 입법예고 : 2023. 11. 16. ~ 11. 22.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출산율”을 “출생율”로, “출산 장려”를 “출생 장려”로, “출산 및”을 “출생 및”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출산축하금”이란 출산장려”를 ““출생축하금”이란 출생 장려”로 한다.

제3조 중 “출산”을 “출생”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출산 및 양육지원사업)”을 “(출생 및 양육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산”을 “출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출산장려”를 “출생장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출산장려”를 “출생장려”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출산축하금”을 각각 “출생 축하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출산축하금의”를 “출생축하금의”로,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을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출산축하금”을 “출생축하금”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출산축하금”을 “출생축하금”으로 한다.

1. 첫째아 30만원

2. 둘째아 50만원

② 구청장은 제1항 각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생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중복 지원 제한) 출생축하금 및 출생축하용품 지원과 같은 종류의 지원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받은 경우 중복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8조(중전의 제7조) 중 “출산축하금”을 “출생축하금”으로, “지체 없이”를 “그 비용이나 물품을”로 한다.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①구청장은 출생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저출생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출생 및 양육 지원 제도를 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위해 홍보물 및홍보물품을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10조(출생·양육 지원 자문위원회) 출생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구청장

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양육 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출생 및 양육 지원 정책의 제안 및 발굴에 관한 사항
3. 출생 및 양육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출생 및 양육 지원 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출생 및 양육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출생 및 양육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

나. 출생 및 양육 지원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

다. 출생 및 양육 지원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장

제12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생축하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출생아 가정부터 소급 적용한다.

다만, 공포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경우에 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출산</u>을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u>출산 장려</u>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u>출산 및 양육</u>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u>출산축하금</u>”이란 <u>출산장려</u>와 출생아동 출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p> <p>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u>출산 및 양육</u>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p> <p>제4조(<u>출산 및 양육</u>지원사업) 구청장은 <u>출산 및 양육</u>에 유리한</p>	<p><u>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u>출생</u>을 ----- ----- ----- <u>출생 장려</u> ----- ----- <u>출생 및</u> ----- -----.</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u>출생축하금</u>”이란 <u>출생장려</u>----- ----- -----.</p> <p>제3조(구청장의 책무) ----- ----- ----- <u>출생</u> ----- -----.</p> <p>제4조(<u>출생 및 양육</u>지원사업) ---- ----- <u>출생</u> -----</p>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2. (생략)
- 3. 출산장려를 위한 홍보
- 4. 그밖에 구청장이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자) ①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구”라 한다)에 출생아동과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부모가 출생아동 출생일 현재 구 거주일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② (생략)

③ 출산축하금 대상 출생아동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른다. 다만, 재혼 가정인 경우는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서에 포함하며, 주민등록 동거인란에 등재된 배우자의 실제

-----.

- 1. 2. (현행과 같음)
- 3. 출생장려-----
- 4. ----- 저출생 -----
----- 출생장려 -----

제5조(지원대상자) ① 출생축하

금 -----

-----.

② (현행과 같음)

③ 출생축하금 -----

양육자녀도 순서대상에 포함한다.

④ 해당 출생아동의 출생과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축하금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기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출생아동이 쌍생아 이상일 경우 출생아동별로 태어난 순서에 따라 각각 지원한다.

<신 설>

<신 설>

3. 4. (생 략)

② 출산축하금은 출생아동 출생일, 또는 구 거주일 1년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별지 서식의 출산축하금 신청서 및 통장사본을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출산축하금 신청인은 제5조의 지원대상자 중 1인으로 한

--.

④ ----- 출
생축하금의 -----
----- 출생축하금 지원대상-----
-----.

제6조(지원기준 등) ① -----

--- 출생축하금-----
---. -----
-----.

1. 첫째아 30만원

2. 둘째아 50만원

3. 4.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 각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생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출생축하금 -----

다.

<신 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등으로 출산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

제7조(중복 지원 제한) 출생축하금 및 출생축하용품 지원과 같은 종류의 지원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받은 경우 중복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8조(환수조치) ----- 출생축하금-----
----- 그 비용이나 물품을 -----.

제9조 (교육 및 홍보) ①구청장은 출생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저출생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출생 및 양육 지원 제도를 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위해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10조(출생·양육 지원 자문위원회) 출생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양육 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 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출생 및 양육 지원 정책의 제안 및 발굴에 관한 사항

3. 출생 및 양육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출생 및 양육 지원 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출생 및 양육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일자리·보건·주거 등 출생 및 양육 지원과 관련

<신 설>

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
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출생 및 양육 지원과 관련
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사람

다. 출생 및 양육 지원과 관련
된 기관 및 단체의 장

제12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
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8. 10.]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246호, 2022. 8. 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을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7.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자”란 친권자 또는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출생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08.10.>
2. “출산축하금”이란 출산장려와 출생아동 출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08.10.>

[전문개정 2019.7.19]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7.19]

제4조(출산 및 양육지원사업) 구청장은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녀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인프라 구축
2. 아동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
3. 출산장려를 위한 홍보
4. 그밖에 구청장이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9.7.19]

제5조(지원대상자) ①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출생아동과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부모가 출생아동 출생일 현재 구 거주일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22.08.1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생아동이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 <개정 2022.08.10.>

③ 출산축하금 대상 출생아동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른다. 다만, 재혼가정인 경우는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서에 포함하며, 주민등록 동거인란에 등재된 배우자의 실제 양육자녀도 순서대상에 포함한다. <개정 2022.08.10.>

④ 해당 출생아동의 출생과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축하금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08.10.>

[전문개정 2019.7.19]

제6조(지원기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출생아동이 쌍생아 이상일 경우 출생아동별로 태어난 순서에 따라 각각 지원한다.

1. 삭제 <2022.08.10.>

2. 삭제 <2022.08.10.>

3. 셋째아 70만원

4. 넷째아 이상 100만원

② 출산축하금은 출생아동 출생일, 또는 구 거주일 1년 미만인 경우 전입일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별지 서식의 출산축하금 신청서 및 통장사본을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08.10.>

③ 출산축하금 신청인은 제5조의 지원대상자 중 1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7.19]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등으로 출산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개정 2019.7.19>

제8조 삭제 <2022.08.10.>

제9조 삭제 <2022.08.10.>

제10조 삭제 <2019.7.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590호, 2009.8.18)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84호, 2011.10.27)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46호, 2019.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246호, 2022.08.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부터 적용한다.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시행 2022. 6. 15.] [법률 제18580호, 2021. 12. 14., 일부개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3.>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방법·시기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2. 14.>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80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지원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4.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
 5. 직장과 가정의 양립
 6. 음란물·유혹가·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9.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수유 및 육아와 관련된 모·부성권 보장을 위한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17.>
- 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